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93 |
|----------|-----|

2011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4월 11일, 김용석(서초4)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1년 4월 1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 6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용석(서초4)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조례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부분을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의원 겸직금지에 의해 사문화된 시의회의원 2인을 삭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시장이 임명할 뿐만 아니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로 변경·수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 임원의 구성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로 하고 “시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2인”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를 “임면한다”로 변경함 (안 제9조제2항).
-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3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함(안 제1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을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것은 “시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재단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 “시의회 의원 2인”을 삭제한 것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사문화된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 또한 같은 조항에서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로 하고 “시 관계공무원”을 삭제한 것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과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기획관”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재단의 정관에 그 내용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함임.
-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에서 “임명”을 “임면”으로 수정하는 것은 “임명”과 함께 “해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

다만 “임명”은 “이사회에서 추천”과 “이사장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임기 중 “해임”의 경우, 추천과 제청이 아니라 비위 행위의 적발이나 부적절한 처신 또는 부진한 경영성과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집행부가 최근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정관(안)이 제9조제2항에서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이 경우, 안 제9조제2항은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시장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로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에서 재단의 결산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3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한 것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에 출납사무를 폐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정리기한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수정으로 사료됨.

또한 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결산서 제출기한도 3월이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관)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임명한다"를 "임면한다"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2월"을 "3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정관)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u>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 <p>제5조(정관)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
| <p>제6조(임원) ① 재단은 <u>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u> 구성하되, <u>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2인,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u> 하고, <u>감사 2인을 둔다</u></p> | <p>제6조(임원) ① 재단은 <u>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u> 한다.</p> |
| <p>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u>임명한다.</u></p> | <p>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u>임면한다.</u></p> |
| <p>제13조(업무계획 등)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u>2월</u>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13조(업무계획 등)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u>3월</u>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